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가단503400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8. 5. 9.

판결 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239,957원 및 그 중 10,071,428원에 대하여는 2017. 11.23.부터 2018. 1. 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7. 7. 1.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위 가.항 기재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3. 28.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한 :2022. 3. 25.,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상대처 농협은행 광주시지부)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는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및 이에 대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 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3) 피고 A는 2017. 3. 28. 위 신용보증서에 기해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대출받았으나, 2017. 7. 26. 이자연체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2017. 11. 23. 농협은행에 10,161,7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90,3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0,071,428원이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

1) 피고 A는 임대인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2) 피고 A는 2017. 7. 1.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위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이하'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한 후, 임대인 C에게 통지하였고, 임대인 C는 위채권양도를 승낙한 후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A는 원고에게 10,239,957원(대위변제금 잔액 10,071,428원 + 확정손해금 29원 + 채당금 168,5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0,071,42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1.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채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임대인인 C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환

목 록

채권의 표시

채무자 : B

채권금액 : 20,000,000원

제3채무자 : C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래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종료로 인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부동산 표시

경기도 광주시 D, E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66.32㎡

1층 65.86㎡

1층 21.87㎡

2층 254.05㎡

2층 254.05㎡ 끝.